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89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부승찬·허영·김한규  
백혜련·박선원·윤준병  
황명선·권철승·김영환  
김남근·안태준·안도걸  
소병훈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원의 임기, 직무,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 및 직원의 법적 지위와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기념사업회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복무 기준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념사업회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임원 및 직원에게 공직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제외한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기념사업회 임원 및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임원 및 직원의 지위) ①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8조의2(임원 및 직원의 지위)</u></p> <p>①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p> <p>③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